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788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6일  
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2년 6월 5일
- 나. 발 의 자 : 오필근 의원(찬성자 20명)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7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3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 
(2012년 6월 25일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오필근 의원)

### ○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, 그리고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○ 주요골자

- 가. 가. 조례 제3조 「별표 1」 7. 란 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가로판 매대와 구두수선대의 경우 현행 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

액에서, 그리고 노점의 경우 현행 토지가격에 0.02를 금액에서 각각 0.005로 조정 (안 「별표 1」 7.)

### 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#### ■ 제안경위 및 개요

- 본 개정안은 오필근 의원이 2012년 6월 5일 발의(찬성자 20명)하여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,

현행조례 별표1의 “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”와 “노점”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점용면적  $1m^2$ 당 “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”과 “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”을 모두 “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”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.

- 참고로 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0.02에서 0.01로 낮추는 조례개정안(2012. 4. 6 시장 제출)이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금회 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■ 도로점용료 부과현황

##### 가.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료 최대 및 최소 부과 현황

- 2011년 기준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841개의 노점상 중 최대 부과금액과 최소 부과금액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노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**[표] 노점상 도로점용료 최대 및 최소 부과 현황(2011년 기준)**

(단위: 원)

구 별	부 과	지 번	점용료	점용면적	1㎡당
성북구	최대부과	동선동1가 117	1,199,440	1.1㎡	1,090,400
송파구	최소부과	잠실야구장앞	146,300	3.0㎡	48,767

**나. 점용료 산정비율 인하에 따른 점용료 변화예측**

- 2011년 부과내용을 기준으로 2012. 4. 6일 시장제출안과 동 개정안에서 각각 제시한 노점상에 부과되는 점용료는 다음 표와 같이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,

**[표] 개정(안)별 노점상 점용료 변화 추이(2011년 기준)**

(단위 : 원)

노점 소재지	점용 면적	2011년 점용료 (0.02적용)	조례 개정(안)별		도로법 시행령 개정 후 (공시지가 80%적용)		비고
			0.01적용	0.005적용	0.01적용	0.005적용	
종로구 관철동 15-6	1.7㎡	1,076,570원	538,250원 (△50%)	269,140원 (△75%)	430,620원 (△60%)	215,510원 (△80%)	

※ ㎡ 당 공시지가 53,828,500원

참고로, 2012년 6월 13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중인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에 따르면 점용료 산정기준의 토지가격을 기존의 “공시지가”에서 “공시지가의 80%”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
- 한편, 동 개정안이 노점과 더불어 점용료 산정비율을 현행 0.01에서 0.005로 낮출 것을 제안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다음 표와 같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노

점에 비해 인하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.

[표] 개정(안)에 따른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 변화 추이(2011년 기준)

(단위 : 원)

구분	소재지	점용 면적	2011년 점용료 (0.01적용)	조례 개정(안)	도로법 시행령 개정 후 (공시지가 80%적용)
				0.005적용	0.005적용
가로판매대	종로구 관철동 6-1	3.92㎡	991,700원	495,850원 (△50%)	396,680원 (△60%)
구두수선대	종로구 관철동 7-12	4.48㎡	990,000원	495,000원 (△50%)	396,000원 (△60%)

※ ㎡ 당 공시지가 : 25,300,000원(관철동 6-1), 22,100,000원(관철동7-12)

#### 다. 점용료 산정비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변화예측

- 2011년 기준으로 노점상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, 동 년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인하 시 도로점용료 수입 변화 예측,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 대한 세수예측은 다음 표들과 같음.

[표] 2011년 노점상 및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노 점 상	보도상영업시설물	합 계
2011 세외수입	소계	470	1,190	1,660
	서울시	82	476	588
	자치구	388	714	1,102

[표] 2011년 세입기준 점용료를 인하 시 도로점용료 수입변화 예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노 점 상		보도상영업시설물		합 계	
		점용료	증감	점용료	증감	점용료	증감
2011 세외수입	소계	117	-353	595	-595	712	-948
	서울시	21	- 61	238	-238	259	-299
	자치구	96	-292	357	-357	453	-649

[표] 2011년 기준 점용료를 인하 및 시행령 개정시 도로점용료 변화 예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노점상		보도상영업시설물		합 계	
		점용료	증감	점용료	증감	점용료	증감
2011 세외수입	소계	94	-376	476	-714	570	-1,090
	서울시	18	- 64	189	-287	207	-351
	자치구	76	-312	287	-427	363	-739

## ■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노점상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상당수가 영세 상인이라는 점과 이들이 서울시가 제도권 안에서 노점상을 관리하려는 노력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호소하며 점용료를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취지는 적극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,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세수가 감소하고, 당초 불법으로 운영되던 시설들이 일단 제도권 안에만 들어오면 각종 추가 혜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점 등에서는 보다 균형감각을 갖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88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년 6월 26일

발 의 자 : 건 설 위 원 장

## 1. 수정이유

동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3번 개정안의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료율이 0.01임을 고려하고 자치구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상인들의 부담 등을 비교형량하여 본 안이 제시한 점용료율 0.005보다 인하 폭을 다소 낮추어 0.007로 수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가.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료율을 0.007로 조정함(안 별표 1)

나. 조정된 점용료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(부칙)

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관련)

7.노점·자동판매기·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점용면적 1 m <sup>2</sup>	1년	토지가격에 0.007 을 곱한 금액
	노점			토지가격에 0.007 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
	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안 부칙 제2조 중 “2012년”을 “2013년”으로 한다.



# 수정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점용료 산정기준 (제3조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5%; vertical-align: top;">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</td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점 용 면 적 1 년  1 m<sup>2</sup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토지가격에 0.01을 곱 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노점·생 활정보지 통합패포 대</td> <td>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</td> <td>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</td> </tr> </table>	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	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	점 용 면 적 1 년  1 m <sup>2</sup>	토지가격에 0.01을 곱 한 금액	노점·생 활정보지 통합패포 대	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	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	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	<p>[별표 1] 점용료 산정기준 (제3조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5%; vertical-align: top;">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</td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점 용 면 적 1 년  1 m<sup>2</sup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노점</td> <td>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생활정보 지통합패 포대</td> <td>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</td> <td></td> <td>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</td> </tr> </table>	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	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	점 용 면 적 1 년  1 m <sup>2</sup>	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	노점	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	생활정보 지통합패 포대	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		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	<p>[별표 1] 점용료 산정기준 (제3조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5%; vertical-align: top;">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</td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점 용 면 적 1 년  1 m<sup>2</sup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노점</td> <td>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생활정보 지통합패 포대</td> <td>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</td> <td></td> <td>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</td> </tr> </table>	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	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	점 용 면 적 1 년  1 m <sup>2</sup>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노점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생활정보 지통합패 포대	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		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
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		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		점 용 면 적 1 년  1 m <sup>2</sup>	토지가격에 0.01을 곱 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노점·생 활정보지 통합패포 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	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	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	점 용 면 적 1 년  1 m <sup>2</sup>	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노점		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활정보 지통합패 포대		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노점· 자동판 매기·상 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	가로판매 대, 구두 수선대	점 용 면 적 1 년  1 m <sup>2</sup>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노점	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활정보 지통합패 포대		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동판매 기·상품 진열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 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7.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.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노점		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
	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 「별표 1」 7.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

### [별표 1]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관련)

현행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		
	점용단위	기간단위	점용면적 1m <sup>2</sup>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7. 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			
	노점·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		토지가격에 <u>0.02</u> 를 곱한 금액		
	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

#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

### [별표 1]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관련)

개정안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		
	점용단위	기간단위	점용면적 1m <sup>2</sup>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7. 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			
	노점		토지가격에 <u>0.007</u> 을 곱한 금액		
	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		
	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